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2. 24 선고 2020가단2255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2. 24

주 문

1.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5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남부산지소 2016. 5. 17. 접수 제25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